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7. 4. 19.>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 교육희망일 필수 기재바랍니다.

지역1부 - 접수일 접수번호 :	교육희망일	2019. . . [13:30~17:30]
----------------------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형태 []법인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전자우편주소(이메일)
	전화번호(유선)			FAX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품)	업종코드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만 적습니다)			
사용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이동전화)
	우편번호(-)	주소		
예방활동분야	[] 위험성평가		[√] 사업주 교육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성립일	
	원사업주의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기재)			

우리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상시근로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018년 이후에 성립한 사업장만 제출)	수수료 없음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재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스스로 안전보건의식을 높이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하는 재해예방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산재예방요율제도를 시행합니다.

1. 산재예방요율제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하여 안전보건공단의 인정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제도

2. 재해예방활동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활동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3. 적용대상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

4. 적용방법

구분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 교육 인정
할인율	산재보험료를 20% 인하	산재보험료를 10% 인하
유효기간	3년간	1년간
방법	재해예방활동 인정일이 속한 다음연도부터 인정기간 만큼 일할계산하여 산재보험료를 인하 (중복시 인하율이 높은 것 적용)	

5. 신청방법

『재해예방활동신청서』 (상시근로자수 증명서류 첨부)를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에 제출
 ※ 상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또는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지도원에 문의

6. 업무처리절차



※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및 산재예방요율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